

[사 건 명] 행심 2014-1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및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중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4.07.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2일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5시간』 행정처분을 『학교에서의 봉사 1일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5시간』 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07.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에서의 봉사 2일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5시간』 행정처분을 감경 및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중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2014. 7. 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2014. 7.25.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학교에서 봉사 2일 및 특별교육 5시간』 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4. 7. 25.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4. 8.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오히려 ○○○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이고, 청구인의 ○○○에 대한 폭력은 ○○○ 및 □□□, ●●●의 청구인에 대한 감금 및 폭행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이라 한다)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2014. 7.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에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자치위원회가 이 사건 가해학생인 ○○○ 및 □□□, ●●●에 대하여 청구인과 똑같이 학교봉사 2일 및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한 바, 이 사건은 ○○○ 등이 먼저 유발하였고, 청구인의 피해가 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므로 감경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피해자이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과학시간 및 화장실에서 ○○○에게 폭력을 사용하였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청구인도 학교폭력 가해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자치위원회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사전에 자치위원회의 개최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자치위원회의 심의과정에도 청구인의 부모가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절차를 진행한 만큼,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다. 청구인은 다른 ○○○ 등의 학생과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이 반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에 청구인과 ○○○ 등의 관계, 싸움의 경위 및 교육적인 취지를 볼 때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판 단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1) ○○○이 2014. 7.15. 4교시 과학수업시간에 싱크대에 떨어뜨린 부채를 청구인의 머리에 얹으며 장난을 쳐서 이에 청구인은 손에

물을 받아 ○○○에게 뿌렸고, 이후 서로 말다툼 및 폭력을 사용하였다

- 2) ○○○이 2014. 7. 15. 점심시간에 ●●●, □□□을 통하여 청구인을 2층 화장실로 데리고 오게 한 다음, ●●●, □□□은 화장실 밖에 있고, 화장실 안에서 청구인과 ○○○은 서로 폭력을 사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안경이 깨어지며 얼굴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 1) 학폭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은 오히려 ○○○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피해자이고, 청구인의 ○○○에 대한 폭력은 ○○○ 및 □□□, ●●●의 청구인에 대한 감금 및 폭행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이는 학폭법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학시간에 청구인의 ○○○에 대한 행동은 비록 ○○○이 먼저 유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에 대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음이 분명하고,

화장실에서 청구인의 ○○○에 대한 폭력은 비록 □□□, ●●●이 청구인을 데리고 간 점, □□□, ●●●이 화장실 밖에 있었던 점, ○○○이 청구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안경이 깨어진 점은 있지만, 이것만으로 청구인이 ○○○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 폭력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은 2014. 7.24. 자치위원회의 심의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에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주장하나, 청구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의 진술서 및 녹취록에 의하면 사전에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에게 사전에 자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1차 과학시간에 ○○○이 청구인의 ○○○에 대한 폭력을 유발한 사실, 또한 2차 화장실 사건에서도 □□□, ●●●이 청구인을 먼저 데리고 가서 ○○○이 청구인에게 먼저 폭력을 가한 사실, 청구인이 ○○○의 폭력에 의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 □□□, ●●● 보다 더 경하게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가해 학생인 ○○○ 및 □□□, ●●●과 똑같이 학교봉사 2일 및 특별교육 5시간의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인 『학교에서의 봉사 2일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5시간』의 행정처분을 『학교에서의 봉사 1일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5시간』으로 감경하여 처분한다.

라)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폭법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처분이 너무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을 감경하기로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 만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